

2019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6월 24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적합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으로 지역 활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2백만원(기업당 최대 3명까지)
 - 기존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공고 후 채용일로부터 ~ 2021. 02. 28.
 - 채용된 청년은 공고 후 채용일 기준으로 최초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금 지원)

□ 지원기업 참가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2019.6.24)로 부터 만39세 이하(채용일 기준)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
 -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기업

○ 지원대상 기업

- 시군 소재 사업장 둔 제조업으로서 재무제표상 제품매출이 있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인중소기업. 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중소기업
- 경상북도 명장 및 최고장인 기업

○ 청년 신규채용 지원배정 인원수 및 지원기간

- 시군별 지원 인원

시군명	신규채용 인원수	지원기간	비 고
합 계	9	공고 후 채용일로부터 ~ 2021. 02. 28.	시군별 지원 범위 내, 매출액에 따라 참여청년 지원
김천시	6		
예천군	2		
울진군	1		

※ 배정인원 기준 : 20억 미만(1명), 30억 미만(2명 이내), 30억 이상(3명 이내)

《 지원신청 제외 》

<참여기업>

-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 임금체불 사업장,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
-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인척 채용한 기업

<참여청년>

-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 ◆ 유사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및 반복 참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 중인 경우(인위적 감축 후, 재 채용 불가)
- ◆ 자격 조회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선정방법

○ 선정기준

- 평가표에 따라 서류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 ※ 시군별 배정된 인원 수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 선정된 참여기업이 포기 및 취소할 경우 시군별 차 등위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100점)

○ 평가항목 : 경영상태, 종업원 수, 채용조건, 타 시도에서 전입 등

구 분	정량적 평가 기준 (100점)	
평가 항목	·매출성장 역량(15점)	·가점(20점)
	·재무구조의 안전성(15점)	- 장애인 및 취업보호 채용기업
	·매출규모(15점)	- 국가유공자 채용기업
	·종업원 수(15점)	-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참여청년 평균 급여(10점)	- 여성기업
	·정규직 채용 여부(15점)	-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타 시도에서 전입 여부(15점)	- 경상북도 명장 및 최고장인 기업

2

신청서류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6. 24(월) ~ 2019. 7. 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jobforu.co.kr>)

※ 첨부파일은 전자파일(PDF)로 등록

1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사이트 접속(http://www.jobforu.co.kr)	
2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바로가기	바로가기
3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사이트 회원가입	회원가입(기업)
4	사업신청 바로가기	사업신청 바로가기
5	사업신청서 작성 (기업, 참여청년등록)	사업신청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접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3.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 1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4. 공장등록증 1부 4-1. 건축물관리대장(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제외) 1부 4-2. 임차공장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제외) 1부 5. 국세완납증명서(2019년 6월 발급) 1부 6. 지방세완납증명서(2019년 6월 발급) 1부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9년 6월 발급) 1부 8. 참여청년 주민등록등본(이전주소지를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 1부 9. 참여청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2018년 1월 ~ 채용일) 1부 10. 참여청년 근로계약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참여청년) 1부 12. 평가항목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명장 및 최고장인 등)	증빙 서류 PDF 파일로 첨부

3

신청시 유의사항

□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체 없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퇴사 시, 참여청년 「건강보험자격상실확인서」 를 제출한다.
 - 대체인력 충원 시 참여청년의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를 제출한다.

- 참여청년의 자진퇴사 및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이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단,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 최종선정 공고일 이전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2. 현장점검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 시 참여기업 업종이 지원업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3. 지원금

-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분기 내에 참여청년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유지된다.
- 참여청년의 급여는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수령액이 반드시 200만원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만약, 실제 수령액이 2백만원 이하 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 참여청년이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text{※ 지원금} \times \text{근무일수} \div \text{해당 월의 일수}$$

□ 참여청년 유의사항

1. 주소 이전

- 참여청년은 중소기업 소재 시군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반드시 이전 하고, 지원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2. 근무지

- 참여청년은 선정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이외 시·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한다.(경고 조치)

□ 경고사항

1. 경고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연 2회)
- 참여기업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사업관련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청년이 추후 동일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
-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 참여청년 퇴사 시 1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미채용 시에는 선정(지원)을 취소
- 참여기업의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사업주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참여청년으로 채용한 경우 등

4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강소기업기획육성팀 (☎ 054-470-8559, 8558, 8566)